

의안번호	2214243
의 퇴 인	정희용의원
회 답 일	2026. 2. 19.
추계번호	25B6246

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)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 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(이하 “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”라 한다)를 대상으로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·관리하여야 함(제1항) 2. 민간의무생산자: 제1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. 다만, 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함	의무규정
2	안 제7조의2(자발적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) 신설	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축산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(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의 설정)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7조의2(자발적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)	

2. 상세 사유

가.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(안 제5조)

□ 개정안은 「축산법」 제22조¹⁾에 따라 허가를 받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 제8조²⁾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대상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수입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목표미달성분에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대상이 축소될 수 있어 국가의 수입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
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, 현재까지 과징금 부과 사례는 없음
- 참고로,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 수는 11만 3,544개소임

□ 개정안에 따른 수입감소의 규모는 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의 규모 및 목표 미달성분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, 현시점에서는 해당 정보들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1) 제22조(축산업의 허가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1. 종축업

2. 부화업

3. 정액등처리업

4.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

2) 제8조(과징금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목표미달성분에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나. 자발적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(안 제7조)

- 개정안에 따라 안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축산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규모 및 지원의 기준·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, 개정안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향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규모를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nabo.go.kr